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19

발의연월일: 2021. 7. 23.

발 의 자:이주환・金炳旭・권명호

김정재・서병수・김용판

지성호 · 정동만 · 한무경

송언석·양금희·전봉민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 끝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 음.

그러나, 현행법상 전몰군경의 유족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되어있어 자녀의 실질적 독립 경제활동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.

이에,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 세로 상향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성년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12조제2항). 법률 제 호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"미성년인"을 각각 "만 24세 이하인"으로, "성년 이"를 "만 25세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상금) ① (생 략)	제12조(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	2
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	<u>만</u>
<u>미성년인</u> 자녀로 한정하되, 대	<u>24세 이하인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	
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	
가 <u>성년이</u> 된 경우에도 <u>미성년</u>	<u></u> 만 25세가
<u>인</u>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.	- <u>만 24세 이하인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	
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	
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	
에도 또한 같다.	,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